

수입업체 물류창고 소유 또는 임대 의무 관련 법령 (인니)

□ 수입업체 허가 시 (냉동)창고 보유 또는 임차 의무 관련

유통업을 하고자, 투자조정청(BKPM)에서 농수산물식품 회사설립 및 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창고소유가 요건.

1. 수입업체 물류창고에 관한 일반 법령

○ 관련법령

-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2 tahun 2013
-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23/MPP/Kep/1/1998

○ 투자조정청(BKPM) 체크리스트 : 3페이지 13번 항목에 “물류 쪽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” 고 언급되어 있음. 해당 체크 리스트의 근거가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2 tahun 2013 임.

(체크 리스트가 투자청의 공식 서류인 만큼 해당 서류도 법령의 일부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단됨)

*투자조정청 체크리스트는 <별첨> 참고.

2. 가공식품 수입업체 물류창고에 관한 법령

수입허가 요건

◆ 근거 법령

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. 46 / M-DAG / PER / 6/2013 on the Import and Export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

◆ 내용

농산물, 육류 가공식품, 수산물, 목재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수입허가 (Izin impor)를 받을 때에도 창고소유가 필수이며,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, 창고(냉장창고)의 소유·임차를 증명 하여야 하고 가공식품 운송 수단의 소유·임차도 증명되어야 함.

○ 관련법령 세부내용

- (5조 1항) 가공식품(축산물의 부산물을 가공한 식품)을 취급하는 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동봉하여 전자 행정 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a. 회사정관;
 - b. 사업승인서 (SIUP) 또는 축산 위생 사업허가
 - c. 사업자 등록증 (TDP);
 - d. 수입등록번호 (API);
 - e.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장의 소유 혹은 도축장과의 계약 증명
 - f. 창고 (냉장창고) 와 가공식품 운송 수단의 소유·임차의 증명

3. 수산식품 수입업체 물류창고에 관한 법령

수입허가 요건

• 근거 법령

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Trade No. 46 / M-DAG / PER / 6/2013 on the Import and Export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

• 내용

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API-P 혹은 API-U 를 소지하여야 하고,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그 조건 중 하나가 창고 소유임.

○ 세부 관련법령

-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46/Permen-KP/2014
- Keputus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52A/KEPMEN-KP/2013

○ 인도네시아로 수산물을 수입은 하기 3가지 분류로만 가능함.

- API-P 소지자: 가공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
- API-U 소지자: 가공 없이 제 3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
-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의 내부 소비 목적이거나, Promotion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

1) API-P소지자 (근거 법령 : 46/Permen-KP/2014 제 6조 3항)

- a. SKP 그리고 PMTT,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서 (HACCP / ISO 22000) 사본
- b.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
- c.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장소(UPI) 확인서 혹은 처리시설 소재지확인서

- * 52A/KEPMEN-KP/2013 52조A에 따르면 UPI는 급속냉동시설 (-18℃)을 갖추어야 하고, 냉장시설을 영하 18도, 그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함.

2) API-U소지자 (근거법령 : 46/Permen-KP/2014 제 6조 4항)

- a. SKP 사본
- b.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.
- c. 창고소재지 증명서

○ 위의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,

- API-P 소지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가공장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, 수산물가공장소의 조건으로 냉동창고의 소유가 필수적임.
- 또한, API-U소지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조건으로 창고소재지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두 경우 모두, 창고소유는 필수 조건임.